■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8. 4. 19.>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종류 및 적용 안전기준(제2조제3항 관련)

1.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적용 안전기준
가. 어린이용 가죽제품	1)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2) 어린이용 가죽제품 안전기준
나. 삭제 <2018. 4. 19.>	
다. 어린이용 안경테(선글라스를 포함한다)	1)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2) 어린이용 안경테 안전기준
라. 어린이용 물안경	1)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2) 어린이용 물안경 안전기준
마.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1)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2)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안전기준
바.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1)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2) 어린이용 바퀴 달린 운동화 안전기준
사.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1)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2)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안전기준
아. 어린이용 스키용구	1)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2) 어린이용 스키 용구 안전기준
자. 어린이용 스노보드	1)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2) 어린이용 스노보드 안전기준
차. 쇼핑카트 부속품	1)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2) 쇼핑카트 부속품 안전기준
카. 어린이용 장신구	1)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2) 어린이용 장신구 안전기준
타. 어린이용 킥보드	1)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2) 어린이용 킥보드 안전기준
파. 어린이용 인라인 롤러스케이트	1)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2) 어린이용 인라인 롤러스케이트 안전기준
하. 어린이용 가구	1)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2) 어린이용 가구 안전기준
거. 아동용 섬유제품	1)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2) 아동용 섬유제품 안전기준
2. 개별 안전기준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적용한다.	